

이 보도자료는 2023. 3. 29.(수) 09:00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청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정재훈

전화 043-299-4381

# 보도자료

2023. 3. 29.(수)

##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수 집중수사 결과

- 마약류 밀수사범 17명 구속기소, 가액 70억 원 상당 마약류 압수 -

### 공소제기 전·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동종 범죄·피해의 급속한 확산 우려(제9조 제1항 제2호, 제9조 제4항 제1호의 범위 내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**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안창주)**는 '22. 2.경부터 '23. 3.경까지 약 1년간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수사하여,

- 충북 지역 역대 최대 규모인 '라오스 궤 필로폰 3.2kg 밀수' 등 총 10건의 마약 밀수사건을 적발하여 **합계 17명의 밀수사범을 구속기소**하였고,
-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.2kg, 야바\* 10만 정, MDMA (일명 엑스터시) 4,700정 등 **가액 합계 약 7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내 유입·유통을 원천 차단**하였음

\* 태국에서 주로 유통·생산되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합성마약

● 청주지방검찰청은 ① **세관·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**  
② **실시간위치추적, 영상수사장비 활용 등 과학적 수사기법**을 활용하여 마약류 밀수사범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,

- 산업단지 등에 취업한 **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마약 밀수 또는 운반 범행에 가담**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음

● 앞으로 청주지방검찰청은 관세청,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**긴밀히 협력하여 마약류 밀수, 유통 사범은 물론 해외 공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**하고,

- **마약의 국내 유입 차단 및 국내유통을 근절**하여 대한민국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고, **마약청정국으로서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**하겠음

## I

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마약류 발송국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 (37세) 내국인	태국	<b>【필로폰 997.01g 밀수】</b> • A, B는 공모하여 '21. 11. 28.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가액 합계 249,252,500원 상당 필로폰 997.01g을 종이박스 이중공간에 은닉하여 밀수 ※ A는 우편물 수령 거부 후 도주하였으나 1개월간 추적수사로 검거 ※ B는 체포영장 받은 후 범죄인 인도청구(태국)	<b>구속기소</b> ('22. 2. 21.) 1심 선고 징역 3년 ('22. 4. 7.)
	B (35세) 내국인			<b>기소중지</b> ('22. 7. 11.)
2	C (33세) D (55세) 태국 불법체류	라오스	<b>【필로폰 3,228.46g 밀수】</b> • C, D는 공모하여 '22. 2. 11.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가액 합계 807,115,000원 상당 필로폰 3228.46g을 믹스파우더 봉지에 은닉하여 밀수	<b>구속기소</b> ('22. 3. 21.) 1심 선고 각 징역 10년 7년 ('22. 5. 25.)
3	E (33세) 태국 불법체류	라오스	<b>【필로폰 1948.57g 밀수】</b> • '22. 3. 26. 국제소포우편을 이용, 가액 합계 487,142,500원 상당 필로폰 1,948.57g을 차(茶) 봉지에 은닉하여 밀수 ※ 대검에 파견된 태국 마약청(ONB) 수사관과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혐의 입증	<b>구속기소</b> ('22. 4. 21.) 1심 선고 징역 6년 ('22. 7. 6.)
4	F (31세) G (29세) H (35세) 태국 불법체류	라오스	<b>【야바 24,215정 밀수 등】</b> • F,G,H는 공모하여 '22. 4. 28.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가액 합계 1,210,750,000원 상당 야바 24,215정을 차(茶) 봉지에 은닉하여 밀수 • '22. 5. 9. 야바 1정씩 투약	<b>구속기소</b> ('22. 5. 26.) 1심 선고 각 징역 8년 ('22. 10. 27.)
5	I (44세) J (27세) 태국 불법체류	라오스	<b>【야바 9,878정 밀수 등】</b> • I, J는 공모하여 '22. 5. 26. 국제소포우편을 이용 가액 합계 493,900,000원 상당 야바 9,878정을 특수제작한 이중바닥 텀블러 안에 은닉하여 밀수 • '22. 6. 9.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지 및 야바 투약	<b>구속기소</b> ('22. 7. 5.) 1심 선고 각 징역 9년 ('22. 11. 10.)

순번	피고인	마약류 발송국	공소사실 요지	처분
6	K (22세) 내국인	벨기에	<b>【MDMA 502정 수수】</b> • K, L, M은 공모하여 '22. 8. 21. 우체국에서 밀수입된 MDMA 502정을 수수하려다 미수 • K는 위 MDMA 수령과정에서 공문서 위조·행사 ※ L, M은 별건 밀수입 범행으로 '22. 10. 인천지검에서 구속된 관계로 '22. 11. 2. 인천지검으로 이송·수사 진행중	구속기소 ( '22. 9. 2.) 1심 선고 징역 2년 ( '22. 12. 15.)
	L (22세) M (28세) 내국인			타관이송 ( '22. 11. 2.)
7	N (28세) O (30세) 베트남 불법체류	영국	<b>【MDMA 4,232정 밀수】</b> • N, O는 공모하여 22. 9. 20과 같은 달 25 국제특급우편이용 211,600,000원 상당 MDMA 4,232정을 보습제통 등에 은닉하여 밀수	구속기소 ( '22. 11. 21.)
8	P (29세) 태국 불법체류	라오스	<b>【필로폰 4,000g 및 야바 14,109정 밀수】</b> • P, I, J은 공모하여 '21. 8. 5.과 같은 해 9. 8.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가액 합계 1,705,450,000원 상당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 ※ I, J은 별건(순번 5) 수감 중 추가기소	구속기소 ( '23. 2. 10.)
	I (44세) J (27세) 태국 불법체류			불구속기소 ( '23. 2. 10.)
9	Q (39세) R (34세) 태국 불법체류	라오스	<b>【야바 36,000정 밀수】</b> • Q는 '23. 1. 26.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 가액 합계 1,800,000,000원 상당 야바 36,000정을 2단 서랍장 벽면 내부에 은닉하여 밀수 • R는 '23. 2. 1. 위 Q가 밀수입한 야바 36,000정을 수수하려다 미수 ※ 국정원 정보제공으로 인천세관에서 적발	구속기소 ( '23. 2. 21.)
10	S (31세) 태국 불법체류 T (29세) 태국 합법체류	태국	<b>【야바 32,174정 밀수】</b> • S, T는 공모하여 '23. 2. 9.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가액 합계 805,100,000원 상당 야바 16,102정을 선물 상자 및 약통에 은닉하여 밀수 • S, T는 공모하여 '23. 2. 10. 국제소포우편물을 이용, 가액 합계 803,600,000원 상당 야바 16,072정을 선물 상자 및 약통에 은닉하여 밀수	구속기소 ( '23. 3. 8.)

## II

## 주요 수사 경과

### ▣ 필로폰 1,948.57g 밀수 사건 [순번 3]

#### ● '22. 4. 4. 수사 착수, E 긴급체포

※ 우편물이 배송되었음에도 바로 수령하지 않고 직장 동료를 통하여 배송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, **2일간의 잠복을 통해 검거**

#### ● '22. 4. 21. E 구속기소

※ 태국의 처가 보낸 것같이 들어있는 우편물로 알고 수령하였다고 범행 부인하여 **대검에 파견된 태국 마약청(ONCB) 수사관과 신속한 공조수사**(태국의 처가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)와 **휴대폰 포렌식**을 통해 확보한 증거(공범과 대화 녹음파일)로 혐의 입증

### ▣ 야바 36,000정 밀수 사건 [순번 9]

#### ● '23. 2. 1. 수사 착수, Q·R 긴급체포

※ **국정원 정보 제공**으로 인천세관에서 국제특급우편물 속 2단 서랍장 벽면 사이에 은닉된 야바 적발 후 아파트 입구 마트에 배달된 우편물을 수거하는 R를 미행하여 주거지 파악 후 검거하고, 4시간 잠복 후 Q를 순차 검거

#### ● '23. 2. 21. Q·R 구속기소

### ▣ 야바 32,174정 밀수 사건 [순번 10]

#### ● '22. 2. 20. 수사 착수, S·T 긴급체포

※ 1차 우편물 수령자인 S 검거 후 우편물을 전달 받기로 예정된 T에게 **인천세관에서 촬영한 우편물 내부 사진을 보내주어 안심시키고, 실시간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 위치 확인 후 약 7시간 잠복하여 T를 검거**

#### ● '23. 3. 8. S·T 구속기소

### III

## 수사결과 및 수사의의

### ▣ 충북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밀수입된 마약류 압수

- '22. 적발된 충북지역 밀수 마약류는 역대 최대 규모로, '20. 대비 필로폰은 약 17.6배, 야바는 59.4배 급증하였고, 새롭게 MDMA가 다량 유입되는 등 밀수되는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

《최근 4년간 검찰이 압수한 충북 지역의 밀수 마약류》

마약류 \ 기 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필로폰(g)	5	347	5,970	6,466
야바(정)	1,850	1,402	1,898	84,748
MDMA(정)	-	-	-	6,107

- 청주지방검찰청은 관내 마약류 밀수사건을 집중단속하여 마약류 밀수 사범 총 17명을 구속기소하고, 가액 합계 약 70억 원 상당의 마약류\*를 압수하여 국내 유통 자체를 차단함

\* 1회 투약량 기준(필로폰 0.03g, 야바·MDMA는 1정)으로 약 3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

### ▣ 급증하는 외국인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

- 최근 충북 충주·진천·음성 등 관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야바 등 마약을 밀수하여 유통하는 범행이 급증  
-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국 등 동남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와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이는 높은 수익이 범행 급증의 원인

▶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월 200만 원에 불과하지만, 마약류 1회 보관 내지 운반 수당은 400만 원 내지 2,000만 원에 달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

▶ 야바 1정의 태국 도매가격은 30바트(약 1,100원)에 불과하나, 한국 가격은 10만 원 으로서 밀수 시 약 100배의 수익 가능

- 청주지방검찰청은 밀수사범 22명을 적발하여, 그 중 17명을 구속 하고, 해외도주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범죄인인도 청구  
⇒ 마약류 밀수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검찰의 필벌 의지를 보임

## ▣ 과학수사 활용 및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검거

-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 대리수령, 대포폰 사용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검거하기 어려우나,
  - 청주지방검찰청은 ① '22. 8. 대검찰청이 도입한 영상수사장비 활용, ② 실시간위치추적,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수사로 밀수범 검거에 성공함
- 또한, 세관을 통한 수사단서 확보,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하였음

## IV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청주지방검찰청은 밀수·유통\*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, 중형 구형, 범죄수익 박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
  - \* 마약류 유통 범행은 과거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, '22. 9. 10. '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'의 개정에 따라 직접수사 가능해짐
- 아울러 국정원, 외국 수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공범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마약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,
  - 해외도주자도 범죄인인도청구, 강제송환 등 끝까지 추적하여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■■■

**붙임 : 참고 사진 등**

**[순번1] A, B가 밀수입한 필로폰 사진**



종이박스 바닥에 필로폰을 은닉한 모습

**[순번2] C, D가 밀수입한 필로폰 사진**



정상제품 믹스파우더로 위장하여 필로폰을 은닉한 모습

[순번3] E가 밀수입한 필로폰 사진



정상제품 차봉지 위장하여 필로폰을 은닉한 모습



[순번4] F,G,H가 밀수입한 야바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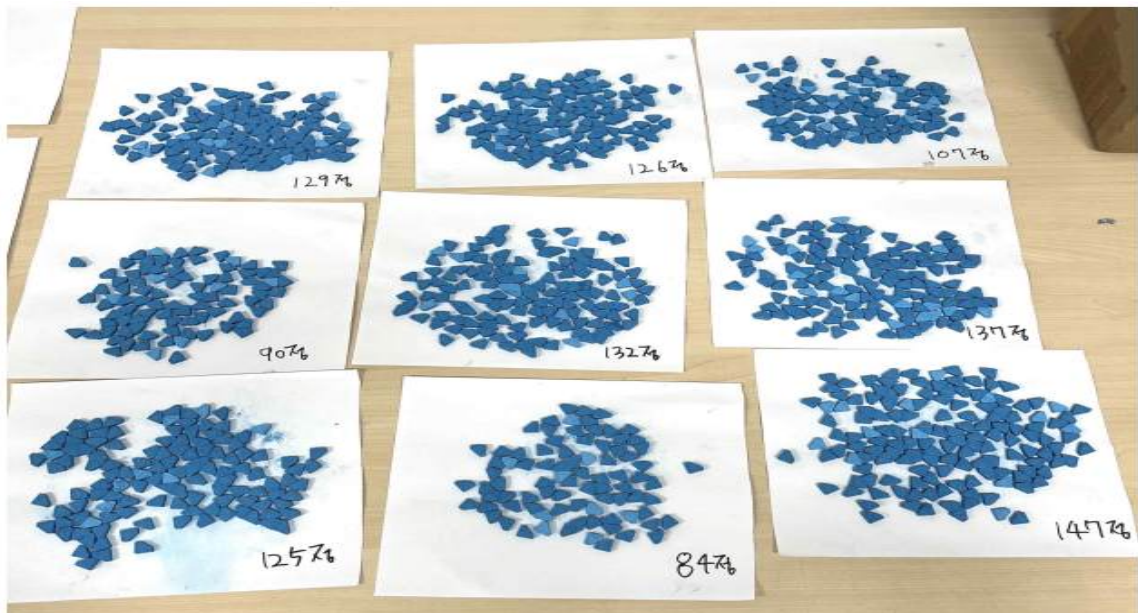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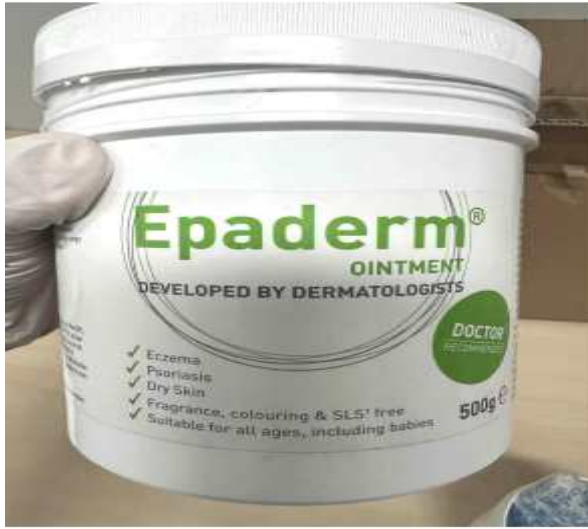
차 봉지 안에 야바를 은닉한 모습

[순번5] I, J가 밀수입한 야바 사진



텀블러통 안에 야바를 은닉한 모습

[순번] N, O가 밀수입한 MDMA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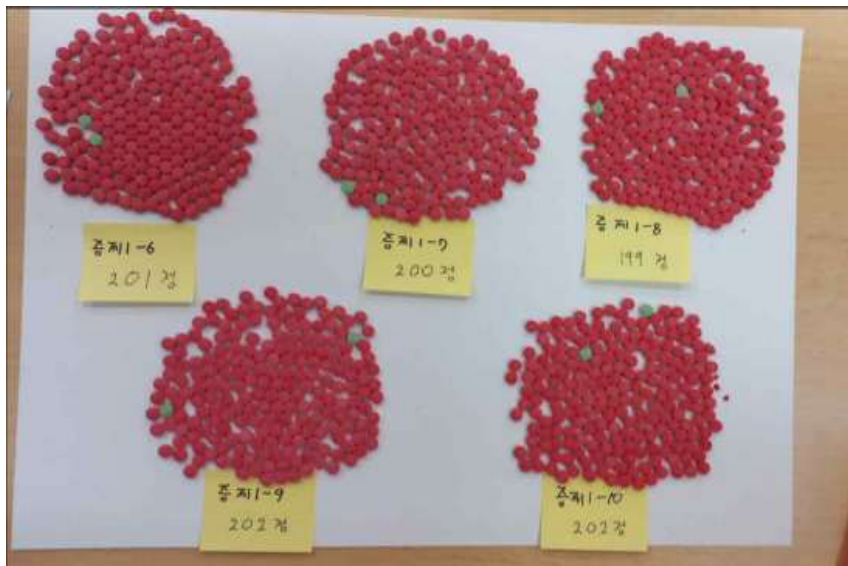
보습제 통안에 MDMA를 은닉한 모습

[순번9] Q가 밀수입한 야바 사진



2단 서랍장 벽면 내부에 야바를 은닉한 모습

[순번10] S, T가 밀수입한 야바 사진



선물상자 등에 야바를 은닉한 모습

[순번6] K가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우체국을 방문한 장면



**[순번7] N과 O가 수취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장면**



(N이 1차 수취지 1층에서 망을 보는 장면)



(N과 O가 2차 수취지에서 집배원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)

[순번9] R가 아파트 입구 마트에서 우편물을 수거하는 장면

